

제주 지역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실태 연구

A Study of the Conditions of Cooperative Child-care Places i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차성란

Dept. of Child Education and Counseling, Daejeon Univ.
Professor Cha, Sung-La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Communal places for parents to take child-care are very important in activating cooperative child-care(CCC). Therefor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een operating Cooperative-Childcare-Places(CCPs) since 2016.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CPs and presented the model type to provide data for the activation of CCC. Qualitative analyses were applied to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10 staff members.

The common task they considered difficult was recruitment, and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operation of the regular program depending on the competence of the staff in charge. The lack of support systems, such as education and consulting, has made it difficult for the staff to do their work. Additionally, four models of CCPs were found, a resident self-governing type, a workplace type, an institutional type, and a rural complex type.

In conclusion, CCP spaces should be planned and facilities created with a focus on the needs of child-care activities. Second, the role of staff in helping to organize the parents' self-governing committee is crucial. Third, it needs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staff members.

Key Words : 공동육아(cooperative child-care), 공동육아나눔터(cooperative child-care place), 가족품앗이(family cooperative activities, family pumasi), 제주특별자치도(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주 저자, 교신저자: 차성란(slcha@dju.kr)

I. 서론

최근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경기육아나눔터를 설치하였고, 좀 더 최근에는 경기도 시흥시, 세종시, 천안시 등 지자체 단위별로 추가적인 돌봄정책 계획 수립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동육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 때문이다. 정책 주체마다 구체적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간나눔, 돌봄나눔, 정보 및 자원 나눔이 가능한 지역돌봄네트워크(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7)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돌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하는 부모들 입장에서 가정육아를 사회육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소외감이나 육체적 부담, 시간적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 발달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부모역할 수행의 목적, 성과중심의 경쟁적 교육방식의 대안으로서 공동체 돌봄 가치의 실현 목적, 나아가 공동체 돌봄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치를 행복한 삶의 가치로 구체화하려는 목적 등 다양한 동기에서 공동육아에 참여하고 있다. 공동육아 참여의 동기나 참여하는 이들의 공동체 가치 공유 정도는 다르지만 어떤 경우든 함께 하는 공동육아가 안정화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이기적 돌봄 모임이 아닌 돌봄 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 그 중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돌봄공동체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즉 공동육아나눔터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비공식적 부모모임이 돌봄공동체로 발돋움 하는 단계에서 공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차성란·권혜진·조정현, 2011), 일시적,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육아 모임이 돌봄공동체로 지속, 발전되거나 또는 해체되는가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공용공간이다. 서울시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사업을 연구한 조막래와 김한별(2015)의 연구에 의하면 마을공동체 활동이 중단되는 내부적 이유로 회원 간 갈등과 함께 공간임대 및 임대료 등 공간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시흥시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만들기 간담회’(차성란, 2017, 미간행)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반기업, 경기도시공사, LH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지자체에서는 세종시 2017년 7월, 익산시 2017년 11월, 공주시 2017년 12월에 연이어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하였으며, 세종시, 시흥시, 천안시 등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사업(세종시, 2018)을 펼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 중 하나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다른 지자체보다 좀 늦은 2016년도에 공동육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공동육아에서 공용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업 시작부터 자녀돌봄을 함께 하는 부모들의 공동육아팀과 공용공간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2016년도에 공동육아팀 18팀, 공동육아나눔터 10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공동육아팀 37팀, 공동육아나눔터 20개소가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가장 먼저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의 경우, 2016년 11월 개소이며, 나머지 육아나눔터들은 2016년 11월, 12월에 개소

하여,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보면 대략 7-8개월 동안의 운영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법 제 19조에 의거, 2016년 5월 공동육아 지원기관으로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종합복지관, 민간단체, 공공기관, 아파트관리사무소, 교회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기관의 직원이나 주민운영위원회가 공동육아활동을 지원하는 중간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소한지 채 1년이 안되는 기간이지만 그동안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육아나눔터의 공간크기나 시설과 같은 물리적 시설은 물론 이용지수, 돌봄 프로그램의 내용, 상시 운영되는 돌봄프로그램 체계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공용공간의 설치는 공동육아활동에 매우 중요하고 지자체와 참여부모들 사이의 중간 지원기관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나눔터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한 기관의 역할은 공동육아팀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공동육아활동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공동체로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동육아 사업에서 나눔터를 설치, 운영하는 수탁기관은 공동체 관련 사업의 중요 세 주체인 주민, 행정, 전문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동육아의 기본적 가치는 공동체에 있기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기관이 인적, 물적 자원개발, 중재, 역량강화,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역할(차성란, 2010)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눔터 수탁기관의 기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제주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나눔터 설치·운영을 맡은 기관들의 운영 실태를 분석 및 유형화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기관이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활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¹⁾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수탁받은 중간 지원기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실무자가 다양한 공동육아 요구에 따른 맞춤형의 공동체돌봄형성 지원과 좀 더 효과적인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운영 방법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공동육아와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의 개념은 공동육아나눔터가 지향해야 할 운영 방향과 연관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공동육아’는 ‘여러 집의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양육자가 한 곳에서 기르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홈페이지)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육아를 ‘집합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의미를 적용하면 한 공간에서 ‘함께 모여 돌봄’을 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육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개인적, 단절적 사회구조 등의 현대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공동육아는 ‘일상생활에서의 필요를 상호부조적 관계에 기초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품앗이 육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트론도와 조안(2014)은 ‘돌봄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성별, 계층에 따른 돌봄의 불평등과 사회구조에서 오는 돌봄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필요로 하는 일에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요구하였다. 공동육아는 일상적 요구를 해결하는 품앗이육아를 넘어, ‘돌봄에 대한 시민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돌봄, 그리고 돌봄을 포함한 삶 전체에서 ‘시민의식과 시민참여’가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하 건가센터로 칭함

공동육아는 시민사회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시민사회의 공동육아는 돌봄이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자나 실천가들이 공동육아를 하나의 운동으로 인식하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의미로 개념화하는 것과 연결된다. 공동육아의 개념을 정병호(1992)는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뜻으로 정의하면서, 함께의 의미를 나와 이웃,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내 아이로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키우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사회 육아의 개념과 근접해 있다. 조형(1994)은 사회육아를 ‘영유아 육아의 일부를 개별 부모나 가정이 아닌 사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개념화 하였다. 사회육아로서의 공동육아는 모든 아이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아동복지의 관점, 나아가 평등한 인권의 관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공동육아에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동체 가치가 기초가 되며, 공동육아활동이 지향해야 할 목표 가치로 제시되곤 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17).

한편 건가센터에서는 ‘공동육아’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출발점이 다소 상이하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육아이나, 문제의 출발이 아이들보다는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 특히 기혼여성의 돌봄부담을 어떻게 완화시켜줄 것인가에서 부터라 할 수 있다. 자녀양육 정보공유나 또래 아이들의 만남 등을 원하는 양육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사회적 관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체 가치에 기초한 ‘우리 아이들 키우기’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제주의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역시 지자체가 예산 지원 및 컨설팅 등 사회육아의 틀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차이점은 공동육아 지원사업을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의 두 개 사업영역 중 하나인 가족친화적인 마을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생활의 중요 영역인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며, ‘키우기 좋은 마을환경’을 이웃들이 아이들을 일상적으로 돌봄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받는 마을 환경, 공동체 유대가 아이들을 키우기 좋게 해주는 마을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서는 품앗이육아를 원하는 부모모임 누구에게나 지원을 한데 비해, 제주에서는 ‘공동체 유대에 의한 돌봄’이라는 목표를 위해 그러한 잠재적 역량이 있는 부모들의 모임²⁾을 선정하여 예산과 컨설팅 지원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의 관점에서 볼 때, 공동육아나눔터는 익명성과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함께 돌봄을 하기 위해 부모와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공동육아 공간으로서 공동육아나눔터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는 넓은 공간이라는 기본적 기능 외에 참여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외로움 해소, 만남에서 오는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심리적, 정서적 기여 그 이상으로 참여자들 사이의 만남을 통해 공동육아의 비전을 공유하고, 참여자들만의 공동육아가 아닌 지역사회 유대가 형성될 수 있는 빈번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

생활 현장에서 부모들이 갖는 ‘공동육아’의 개념은 집단적 차별성을 지닌다. 사전적 의미인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육아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집단, 단순히 함께 모이는 것 그 이상의 공동체적 방식을 통한 보육을 긍정적인 보육대안으로 인식하는 집단, 진보적 사회가치로서 공동체에 대한 지향을 공동육아에 접목하고 있는 집단 등 다양하다. 어떤 의미로 공동육아를 시작하든 공동육아 참여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5-6명 정도의 부모들이 팀을 구성하여 제출한 자녀돌봄 프로그램 기획서에 기초하여 수줍음육아팀을 선정, 예산을 지원하고, 공동체 방식의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에 수반되는 공동체 집단에서의 역동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공동육아에 내재해 있는 민주적 시민의식, 이상적 생활방식으로서의 공동체 사회 이념 등의 문제에 노출되게 된다. 많은 공동육아팀들이 이웃,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육아로 발전하지 못하고 해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이나 ‘아이들이 노는 공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나눔터는 공간과 시설로서의 물리적 환경과 또래, 또래의 부모 및 교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활동이 이루어지는 인적 환경이며, 유년기 삶을 채워나가는 곳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들의 성장환경으로서 그리고 부모들이 공동육아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용공간의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책 사업으로서 공동육아나눔터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맡은 기관과 기관의 사업 실무자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다양한 동기를 지닌 공동육아활동 참여 부모들이 돌봄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공동육아와 공동육아나눔터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지만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나눔터 설치 및 운영기관의 지원 업무’로서 이해할 수 있다.

2.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2008년 ‘육아품앗이’라는 공동체돌봄 사업을 시범으로 시작하였다. 2011년도에는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으로 확대되어 공간설치 부분이 사업에 포함되었으며, 23개 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을 시작하였다. 법적 근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 19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생활교육, 가족문화, 가족상담 사업과 달리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별도 예산에 의한 여성가족부 추진사업이다. 국비로 지원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은 전담 실무자 1인 인건비 및 가족품앗이 운영비로 집행되며, 공간 리모델링 예산은 기업 후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센터별 신청에 의해 선별적으로 지원된다.

여성가족부 사업지침에 의하면 부모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물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요구나 상황에 따라 추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지역센터 별로 추가 설치된 외부 공동육아나눔터는 개소수가 늘어나도 센터 실무자 1인이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무자가 상주하는 센터내 공동육아나눔터와 달리, 자원봉사자나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청소 및 유지관리를 맡고 실무자가 부정기적으로 방문 관리하고 있다.

현재 국비지원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자체 66개소, 비지원 지자체 25개소이며, 총 91개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공동육아나눔터수는 160개에 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160개 나눔터 중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및 운영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나눔터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례³⁾로 먼저 세종시 경우, 세종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2017년 7월 20일),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17년 10월 18일 기준 총 7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2026년까지 공동육아나눔터를 25개소까

3) 서울시는 2012년 공동육아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내용을 보면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과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설치·운영 기관의 지원업무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 경우는 두 사업 모두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지원보다는 부모들의 공동육아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검토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지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세종의 소리, 2017). 시흥시의 경우 2017년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공사비의 90%,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지방행정신문, 2018) 2018년 1월 기준 7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시흥시청 홈페이지). 천안시의 경우 2017년 12월 기준 센터내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여 총 9개 나눔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디트 News 24, 2017).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5년 말 종합적인 가족정책 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대상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돌봄 요구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2016년 공동육아팀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사업을 시작하였다. 공동육아팀 공모 및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관련 예산과 집행은 도의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였으며, 공동육아팀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단 운영은 2016년 5월 설립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담당하였다.

2016년 11월에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이 개소되어 연내 10호점까지 설치되었으며, 2017년 말 기준 20호점까지 문을 열었다. 이 중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를 제외한 19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이 건가센터에 나눔터 운영을 맡긴 것과는 달리, 별도의 운영기관 수탁 공모를 하였다. 나눔터 설치 및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 공간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로 연간 600만원씩을 지원하였다. 인건비는 별도 지원되지 않았으며, 수탁기관 직원 중 실무자 1인을 배정토록 하였다. 건가센터가 나눔터 전담자인데 비해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세종시, 시흥시, 천안시 등은 특히 지자체가 돌봄정책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을 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담

당하고 있어 기존 공동육아나눔터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없으며 다만, 지자체에 따라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제주도의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공동육아팀을 공모, 선정하여 공동체 지향의 사업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한 질적 연구이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설치된 제주 공동육아나눔터 10개소의 사업실무자 및 운영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면담을 통한 조사를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나눔터 컨설팅 사업을 위탁받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의 실무자가 나눔터별로 면담 일정을 조율하였고, 2017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이에 연구자와 실무자가 함께 나눔터를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나눔터에 따라 나눔터 사업 실무자 1인만 면담에 응한 경우, 실무자와 팀장 2인이 참석한 경우가 있었으며, 기관장이 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설명을 해준 사례도 있었다.

2. 연구문제

우선 제주 공동육아나눔터의 내부 이용 공간 특성 및 이용 현황 등 나눔터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실태를 살피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나눔터 설치·운영기관의 운영 실태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나눔터 운영과 관련된 특징과 지역여건 등을 기초로 유형을 구분하여 지역의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

에 적합한 맞춤형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첫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
- 둘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
- 셋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을 구분한다.

3. 자료수집 및 조사문항

나눔터 사업 실무자 1인 또는 실무자와 팀장,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2시간 정도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전에 나눔터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공간 규모 및 내부 시설환경 요소로 이용자 접근성, 건물내 나눔터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안내표시, 공간 면적 및 배치, 도서 및 장난감 배치, 기타 비품 등을 살펴보았다. 내부 디

자인에서 영유아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부모들의 만남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공간 배치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면담을 위한 조사문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나눔터 이용자 실태, 사업관리, 나눔터 운영, 홍보, 평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해당 문항을 질문하였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나눔터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문항은 질문을 제외하였으며, 문항에 따라 관련 질문을 추가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실태

1) 나눔터 설치 현황

나눔터 설치 현황(표 2)을 살펴보면, 나눔터 A가 가장 일찍 2016년 11월 3일에 개소하였으며,

<표 1> 면담 조사를 위한 문항

영역		문항
수탁 기관		공동육아나눔터 명, 수탁기관 유형, 개소일
공간규모 및 시설		공간규모 및 위치, 공간시설 특징
이용실태	개인	월평균 이용자수, 주 이용시간대 및 1회 이용시간
	팀	월평균 이용팀수, 주 이용시간대 및 1회 이용시간
	범위	이용자의 지역 범위, 이동수단(도보 또는 차량)
사업관리	실무자	직책, 담당업무(전임여부, 업무량), 실무자의 경력
	기관	기관장 관여 수준, 기관의 인적 지원(팀장, 동료직원 등), 자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 지원
	사업이해	나눔터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 사업운영의 지향, 올 사업 목표
운영	나눔터 관리	나눔터 개방시간(주중, 주말), 개방시간 중 직원상주 여부, 나눔터 관련 회의 진행 여부, 나눔터 청소 및 내부 관리, 나눔터 개폐
	실무자 업무	수눌음 육아팀 구성 관여, 직원과 이용자간 관계(친밀성), 가장 많은 업무(주 업무내용/업무비중), 이용자의 요청 및 문의
	프로그램	정기·비정기 프로그램, 도서대출여부, 장난감 대여여부, 수탁기관업무와 연계 운영
	네트워크	지역사회 자원 교류, 다른 육아나눔터와의 교류
	홍보	이용자 모집 방법, 이용자 모집 외 홍보 여부
평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 및 이유, 운영상 어려운 점, 직원 입장에서 바라는 점

(표 2)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설치 현황

구분	수탁기관(운영주체)	규모(m ²)	소재층수	소재지	공간 구성 특징	개소 이후 운영기간(개월)
A	아파트관리사무소 (주민운영위원회)	97.5	1	제주시	수면실, 수전 및 조리공간, 부모휴식공간	10
B	공공기관	48	2	제주시	육아용품대여점, 수전	10
C	종합사회복지관	42	1	제주시	별도의 부모휴식공간	10
D	건강가정지원센터	49.5	2	제주시	전용 사무공간	10
E	작은도서관	53.4	1,2	서귀포시	-	9
F	종합사회복지관	99	1	서귀포시	부모휴식공간, 수전 및 탕비시설	9
G	민간단체	40	4	제주시	-	9
H	종합사회복지관	72	1	제주시	공용 부모휴식공간	9
I	종합사회복지관	58	3	제주시	수전	9
J	종합사회복지관	59	3	제주시	별도 장난감도서관	9
평균	-	61.8	-	-	-	9.4

2017년 8월 기준 나눔터의 운영기간은 9개월인 경우가 6개소, 10개월인 경우가 4개소였다. 소재지는 제주시가 8개소, 서귀포시가 2개소로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공간 규모는 가장 좁은 경우가 40m², 가장 넓은 경우가 99m²로 평균 61.8m²였다. 나눔터가 위치한 층수는 1층인 경우가 5개소, 2층 2개소 3층 이상인 경우도 3개소가 있었다. 나눔터 설치 및 운영 수탁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아 5개소, 민간단체 및 기관이 3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 아파트관리사무소 1개소였다.

나눔터 내에 부모휴식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4곳이었으며, 수전 또는 탕비시설, 조리공간 등 물을 사용하거나 조리가 가능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4곳이었다. 나눔터 A의 경우, 영아들을 위한 별도의 수면실과 음식조리를 할 수 있는 작업공간이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나눔터 B는 나눔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일 건물내 다른 층에 육아용품대여점이 운영되고 있어서 영유아기 부모들 방문이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었다. 나눔터 J는 같은 층에 이미 운영중인 기존의 장난감도서관이 별도 설치되어 있었다.

나눔터 운영 실무자 현황을 살펴보면(표 3), 나눔터 A의 경우만 주민대표였다. 공동육아 경험이 있는 대표자 1인 및 3명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눔터 G는 기관의 총괄 팀장으로 양성평등의 의식을 갖고 나눔터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였다. 나눔터 B, E는 공동육아와 직접 관계가 없이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였으며, 나눔터 D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나눔터가 설치된 경우로 건강가정사 자격소지자가 실무자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였다. 나머지 모든 나눔터(C, F, H, I, J)는 복지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였다. 전담여부는 나눔터 A, D 만 전담자였고 기타 나눔터들은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었다. 사업경력으로 보면 나눔터 A, F만 공동육아 또는 공동체 사업 경험이 있었으며, 나눔터 D는 보육교사 경력이 있었다. 나눔터 C, I, J는 신입직원으로 공동육아 사업은 물론, 기관에서 업무를 처음 접하는 경우였다.

운영시간은 나눔터 A의 경우, 나눔터 운영을 주민대표가 전담하고 있으나 상주인력은 아니어서 공동육아팀이 나눔터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개방하고 있다. 기타 나눔터 경우, 오전 주중 오전

〈표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개요

구분	실무자 특성	전담 여부	사업 경력	운영시간	상시 프로그램
A	주민대표	전담	공동육아 경험	공동육아팀 활동시간 중 개방	유
B	행정직 직원	겸임	-	주중 08:30 - 17:00 토 08:30 - 12:00	무
C	사회복지사	겸임	신입직원	주중 9:00 - 18:00	무
D	건강가정사	전담	보육교사 경력	주중 10:00 - 18:00	유
E	언론 종사자	겸임	-	주중 9:00 - 21:00 주말 9:00 - 21:00	무
F	사회복지사	겸임	공동체 사업 경력	주중 10:00 - 19:00 토 10:00 - 17:00	유
G	총괄팀장	겸임	-	주중 9:00 - 18:00 주말개방	유
H	사회복지사	겸임	-	주중 9:00 - 18:00 토 9:00 - 18:00	무
I	사회복지사	겸임	신입직원	주중 10:00 - 17:00	유
J	사회복지사	겸임	신입직원	주중 9:00 - 18:00 수요일(프로그램 있는 경우만) 9:00 - 22:00	무

9시 - 10시에 나눔터를 개방, 오후 5 -7시에 문을 닫았으며, 나눔터 B, E, F, G, H는 토요일 또는 토,일요일에 개방하고 있었다.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나눔터는 A, D, F, G, I 였다.

2) 이용 실태

나눔터 개소 이후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평균 나눔터 이용자수가 많지는 않았다. 나눔터를 부모와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3-5명 정도인 경우(나눔터 B, E, F, G, J)가 많았으며, 그보다 많은 경우에도 10명 - 15명(나눔터 C, D H, I)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이용자수가 많지 않았다. 육아팀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나눔터 A의 경우 육아팀 7팀, 어머니들로만 구성된 어머니팀 2팀으로 가장 이용하는 육아팀 수가 많았고 다음으로 나눔터 D가 8팀으로 많았다. 그밖에 3개 나눔터(나눔터 F, G, J)에서 1-2개 육아팀이 이용하고 있는 정도였다. 나머지 5개 나눔터(나눔터 B,

C, E, H, I)는 육아팀 이용자가 없는 상태였다.

그밖에 이용자수가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이유나 시점은 나눔터별로 상이했다. 영유아검진(나눔터 B)이나 기관의 기존 프로그램(나눔터 D, E, G) 운영시, 그리고 주말에만(나눔터 F) 이용자가 늘어나는 형태를 보였다.

가장 이용자가 집중되는 것은 어린이집 하원 이후였다. 많은 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주 이용시간대는 오전시간과 오후시간으로 양분(나눔터 D, I, J)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전체 10개 나눔터 중 한 곳을 제외하면 모든 나눔터(나눔터 A, B, C, F, G, H)들이 오후 3 - 4시에서 5 - 6시까지 주로 오후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나눔터 이용 수요는 어린이집 하원 이후 저녁시간 이전까지의 틈새 돌봄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간대별 이용자 연령의 차이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나눔터 J의 경우, 12시 전후로는 영아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유아들이 그리고 오후 4-5시경에서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들이 하원 이후 이용하고 있었으며, 나눔터 I의 경우 오전시간에 영아들이 주중에 매일 이용하고 있었다.

나눔터 E는 전략적으로 인근 기관 프로그램 이용 초등생을 저녁 7시-9시까지 나눔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였으며, 나눔터 G는 오후 4시 정도에서 직원들이 자녀와 함께 퇴근하기 전까지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주말에 하루 종일 이용자가 많은 경우(나눔터 F)도 있어서 토요일 오전부터 하루 종일 이용자가 많았다. 나눔터 인근에 복지관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 나눔터가 설치되어 있는 복지관내 도서관 및 체육시설 이용자가 토요일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기관에서 주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나눔터 H는 토요일에도 오전, 오후시간으로 양분되어 이용자가 많았다.

1회 이용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시간

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나눔터 D가 2-3시간, 나눔터 A와 나눔터 F만이 3-4시간 정도로 1회 이용시간이 길었다.

이용자의 지리적 범위는 나눔터 A의 경우,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나눔터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대부분 단지내 거주자였다. 그러나 육아팀에 단지외부 거주자들도 포함하고 있으며, 단지 외부 거주자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나눔터 D의 경우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가 제주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나눔터 F의 경우, 나눔터 공간이 넓고, 나눔터 상시프로그램이 좋다는 이유로 원거리 거주자들이 찾아와 이용하는 경우가 30%정도 있다고 했다. 나눔터 G의 경우,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지리적 범위가 넓다는 응답이었다. 나눔터가 제주시 중에서도 도심에 위치해 있고, 기관의 기존 회원수가 많으며, 기관 종사자 자녀도 나눔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실태

구분	1일 이용자수	1일 이용됨 수	주 이용시간대	평균 이용시간	지역범위
A	10 여명	9팀	16시 이후	3-4시간	아파트 단지 거주자
B	3-5명, 토요일 영유아검진시 20여명	-	13시 이후	30분-1시간	인접 3개동
C	5-10명	-	16-18시	1시간	인접 지역
D	8-10명, 프로그램 운영일 40여명	8팀	10-12시, 14시 이후	2-3시간	제주시 전역
E	4-5명, 인근 기관 프로그램 운영시 7-9시 40여명	-	19-21시	-	인근 동네 5분거리 청소년 문화관 이용학생
F	4-5명, 주말 평균 20여명 이상	2팀	15시 이후 주말은 오전부터	4시간 이상, 장애아(은 종일)	성산읍 지역 70% 인접지역 30%
G	2-3명,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15여명	2팀	14-16시 교육운영시 16-18시	3-4시간	인접 지역 포함 광범위함
H	5-15명, 토요일 30여명	-	10-13시, 15-17시 토 오전	-	인접 3개 지역
I	10-15명	-	10-12시 15-17시	3-4시간	인접지역
J	2-3명	1팀	12시 전후, 16-17시	1-2시간	인접 지역

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실태

1) 나눔터 공간 조성 및 운영

나눔터 공간 조성은 이용가능한 자녀연령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영아들은 눕거나 기어다니는 활동 특성상 자칫 유아나 초등생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필요로 한다. 나눔터 I의 경우, 영아의 수면 및 돌봄공간과 유아 및 초등생 저학년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칸막이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초등생들의 이용이 가능했다. 이에 비해 나눔터 H의 경우, 이용 연령을 고려한 영역 구분이 없었으며,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해 바닥 전체에 쿠션매트를 설치하였고, 이용 연령도 만 3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실내 구성 및 디자인에서 아동의 눈높이를 맞추려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나눔터 I의 경우, 나눔터 입구에 성인용 출입문 안쪽에 아동들이 좋아할만한 낮은 높이의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낮은 높이의 수납장, 수납장 곡면 처리, 벽면 그림, 등 아동이 선호할만한 디자인과 색상을 고려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나눔터 A의 경우, 벽체에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 벽면 전체의 낙서장, 나눔터 F의 경우, 낮은 천정의 다락, 다락에서 아래로 연결되는 미끄럼 계단 등, 아동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한 디자인적 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각 나눔터별로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었다.

나눔터 이용자가 나눔터 조성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다. 기관에서 수탁한 나눔터의 경우, 기관에서 내부공간을 조성했지만 나눔터 A의 경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몇 명의 부모들이 나눔터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을 직접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놀이행동특성, 다양한 돌봄활동, 교구, 도서 및 장난감 구입, 안전 등의 요소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였다. ‘시설 설치 당시부터 아이들 양육

이나 어머니들의 돌봄활동에 최적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장난감이나 도서 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괄적 구매가 아니라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적합한 품목들을 고민해 구입하였다고 한다. 다른 나눔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넓은 조리공간 및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식사 프로그램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부모들이 잠깐 담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잘 갖춰진 나눔터가 적었다. 부모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10곳 중 4곳(나눔터 A, C, F, H)이었다. 그러나 나눔터 H의 경우 나눔터를 이용하는 부모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기관 이용자 및 부모들이 프로그램을 마치는 아이들을 기다리기 위해 잠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부모공간이었다.

대부분 나눔터에서 수전 및 조리시설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전체 나눔터 중 수전이 설치되어 있는 나눔터는 4곳뿐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두 곳은 매우 간단하게 수도꼭지와 소형 썬크볼만 설치되어 있었다. 나눔터 A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여러 명의 부모가 함께 조리 작업을 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조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부족하여, 집에 갖고 있는 주방용품들을 들고 와서 사용하고 다시 가져간다거나, 함께 여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모자라, 역시 집에 있는 제사상을 들고 와서 이용하고 다시 가져가는 식으로 하고 있었다.

나눔터 F에는 현재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부모들을 위한 커피머신과 더운물을 이용할 수 있는 탕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눔터 J의 경우 리모델링을 하면서 싱크대 설치를 고려했으나 건물 구조상 수도설비가 불가능한 경우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부모들은 기관에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싱크대 설치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2) 이용자 모집 및 홍보

새롭게 설치된 나눔터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용자 모집이었다. 이미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용자 확보가 중요치 않았으나 그 밖의 다른 나눔터들은 신규 설치되었기 때문에 모든 나눔터에서 새롭게 이용자 모집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개별이용자 숫자가 적고, 육아팀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눔터 C, E, H, J), 실무자의 이용자 모집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매우 컸다. 나눔터 J의 경우, 업무시간 줄곧 전화를 붙들고 있다고 했으며, 문자를 보내도 반응이 없다고 했다. 이용자 모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용자 모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나눔터도 있었다. 나눔터 A의 경우, 이미 이용자수가 많고 나눔터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모집을 위한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설명회 개최에 대한 게시물을 부착하고, 6개월에 1번씩 연간 총 2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미 실시한 설명회에서 8명의 부모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 4명씩 두 팀의 육아팀을 구성하였다. 또한 육아팀 대표자들이 온라인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활발한 모집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주민 유입이 많은 최근 제주도의 특징이 나눔터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육아팀을 이루는 구성원은 제주 원주민보다 이주민 숫자가 좀 더 많았으며, 제주 원주민의 경우 취업주부가 대부분이었고 이주민들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았다. 주민자치적 성격의 운영을 하고 있는 나눔터 A의 경우는 대부분 전업주부인 이주민 부모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공동육아에 할애할 수 있었으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모들 중에는 다수가 육아에서 공동육아 경험을 했던 것으로 답하였다. 그러나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눔터 J의 경우, 지역주민이나 토착민

이용자가 적으며, 이주민들은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만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주민 중에서도 잠시 1-2년 거주하는 분들은 굳이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으며, 나눔터 이용시에도 부모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나눔터 이용 자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갈등의 요소이자, 지역공동체 형성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나눔터 A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설치 나눔터이지만 단지 밖 외부 이용자를 수용하는 이용자 범위의 개방성을 높인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 나눔터 A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 거주자가 아닌 외부 육아팀이 나눔터를 이용하고자 했을 때, 입주자인 부모가 항의를 하였다.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운영위원들은 나눔터가 아파트 단지 자산이기는 하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외부인에게도 개방 사용'토록 하는 원칙을 정하였다. 실제 아파트 거주자팀 4팀, 외부팀 4팀이며, 인원수로 보면 외부팀이 더 많다. 내 아이만 잘 키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공동육아가 갖는 공동체 가치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비대면 방식의 홍보활동은 이용자 모집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비대면 방식 홍보활동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나눔터 C, J, I), 민간단체(나눔터 G) 등의 수탁기관에서는 기존 회원 대상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 모집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터(나눔터 J) 인근의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단지 배포한다거나 현수막 거치(나눔터 I), 온라인 카페(나눔터 G, I) 등의 방법도 이용자 모집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눔터 J에서는 자녀가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들이 육아팀을 구성하고 나눔터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볼 때, 어린이집이 이용자 모집을 위한 홍보 채널로서 유효성이 있음을 추측케 한다. 한편 나

눔터 I의 경우, 초등학교에 진단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앞에서 직접 진단지를 배포하는 적극적 활동을 벌였으며, 나눔터 G의 경우 상시 프로그램 외에 이용자수를 늘리기 위해 이벤트 프로그램을 4회 정도 기획하고 있었다.

3) 프로그램 및 대여서비스

상시프로그램 운영 여부는 이용자 모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같은 종합복지관이지만 나눔터 이용자들이 확보된 두 개 나눔터(나눔터 F, I)의 경우,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 단위 상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이용자 모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종합복지관 3곳 중 두 곳(나눔터 C, H)은 상시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기획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눔터 J에서는 이용자 모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어머니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자녀돌봄과 무관한 12회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또 다른 나눔터(나눔터 H)의 경우, 기관장이 유아영어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는 응답으로, 학습프로그램을 지양하는 개방적 교육관과 다소 거리가 있었다.

나눔터 I의 경우 오감놀이, 놀이미술, 베이비마사지, 키즈요가 등 매주 진행되는 상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상시프로그램을 나눔터 안내리플릿에 소개하고 있어, 자녀양육기에 있는 부모들이 나눔터를 방문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이에 비해 다른 나눔터들의 경우 나눔터 소개 리플릿에 상시 프로그램이 안내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도서 및 장난감 대여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였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기관 내 독립적인 장난감도서관이 있었던 한 개 나눔터(나눔터 J)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공동육아나눔터들이 도서와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 중 나눔터 D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 및 장난감, 교구교재 등의 대여를 계획하고 있는 정도였으며, 나눔터 G와 나눔터 I는

현재는 대여하고 있지 않으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하였다. 나눔터 개소가 2016년 11월 12월에 이루어져 2017년 7월말까지 약 8개월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용자를 모집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운영주체는 공동육아의 공동체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측된다. 주민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나눔터 A의 경우, 운영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나눔터 A의 경우, 공동체 가치를 지향하는 부모들로 구성된 주민운영위원회가 나눔터 운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눔터와는 출발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나눔터를 이용하는 7개 팀 중 육아팀 두 팀이 마을어린이들까지 포용하는 '어린이식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육아팀끼리만 하던 것을 현재는 육아팀에 한정하지 않고 나눔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월 2회 약 50여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를 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것이다.

복지관에서 수탁한 나눔터 C와 H의 경우, 기관의 기존 프로그램과 나눔터 프로그램이 충돌하는 문제가 감지되었다. 두 나눔터의 수탁기관에서는 아동 대상의 다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중에는 나눔터 상시프로그램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저렴하지만 기관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있기에, 기존 프로그램을 나눔터 상시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경우, 수입원 상실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복지관 나눔터가 직면하는 갈등적 요소라 할 수 있다.

4) 나눔터 운영 관리

나눔터의 상시이용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파악되었다. 주민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나눔터는 참여자의 자발성, 주민자치, 공동체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운영주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눔터 A 경우, 나눔터에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어, 나눔터를 이용하는 육아팀이 있을 때만 나눔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육아팀이 없는 시간에는 나눔터 문을 닫아야 하고, 개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육아팀이 나눔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안은 이들이 방문자를 대상으로 나눔터 이용 방법, 회원가입 안내 등 실무자 역할도 하고 있었다.

나눔터 D, 한 곳을 제외하면, 기타 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나눔터의 경우, 실무자는 사무실 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출입문을 열어 준 이후에 나눔터에 상주하고 있지 않다. 보조인력 조차 지원받고 있지 못한 나눔터들(나눔터 A, B, E, J)의 경우, 신규 이용자가 있을 경우, 안내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많은 나눔터에서 개방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나눔터들이 대부분 오후 5-6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저녁시간, 토요일, 주말 등에 나눔터 개방을 희망한다고 답하고 있었다.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대상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밤 10시까지 개방(나눔터 J)해 놓는다가, 토요일 기관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동안 주말 당직자가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해 놓는 경우(나눔터 H) 등 나눔터의 본래 목적 이용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관 프로그램 운영과 병행하여 나눔터를 개방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기관 건물 내 주말 개방을 하는 다른 기관이 있는 경우(나눔터 G), 나눔터도 주말 개방을 하거나, 나눔터 개방을 부모에게 믿고 맡기는(나눔터 F) 등 방법을 모색하는 사례도 보였다.

5) 담당인력

사업 실무자의 공동육아 사업 방향에 대한 이해가 나눔터를 활성화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사업 방향에 대한 이해는 공동육아 활성화의 필수 조건이나 충분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나눔터 A는 주민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사업방향에 대한 이해가 기초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실무자가 나눔터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눔터들은 사업 운영에 대해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반드시 공동육아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실무자의 사업 방향성 안내를 위한 역량강화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터 C, F, H, I의 실무자는 나눔터가 마을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뿌리 역할, 공동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실무자는 조력자라고 답했다. 때문에, 어머님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이해시켜, 어머님들 사이의 유대형성, 어머님들 스스로 운영 조직화, 어머님들 스스로의 자조모임, 자발적 공동육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실무자 역할로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사례(나눔터 G)가 있는가 하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제공에 의미를 두는 경우(나눔터 B, D, J)가 좀 더 많았다.

실무자가 공동체 관련 경험이 있는 경우(나눔터 A, D, F), 사업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미 이전에 공동육아활동을 경험한 주민대표, 이전 직장에서 공동체 관련 업무 경험이 있었던 실무자, 돌봄 경험이 있던 전담 실무자들이 공동육아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다. 나눔터 A는 나눔터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주민대표가 이미 다른 육아팀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육아팀들이 돌아가며 나눔터 관리를 분담하고 있지만 주민대표는 거의 하루 종일 나눔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하고, 운영위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는 등 적극적이었다. 나눔터 F의 실무자는 현재 기관에 오기 전, 다른 기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화폐 사업 등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었다. 실무자는 나눔터를 이용하는 부모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부모들과의 높은 친밀도, 활발한 상시프로그램 운영 등의 적극적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나눔터 D의 실무자는 17년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공동체 사업 경험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원아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돌봄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길어, 공동육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공동육아 프로그램 기획 능력이 높았다. 실무자와 함께 일하는 팀장은 실무자가 신규 육아팀 구성, 상시 프로그램 추가 등 사업에 대한 열의가 너무 높아 지원하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칭찬을 하고 있었다.

보조인력의 업무 지원 효용성은 크게 높지 않았다. 시니어일자리 사업을 통해 나눔터 C, F, H 등에서 인력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오전 또는 오후에 3시간여 정도를 나눔터에 나와 청소 및 방문자 안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전시간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 지원인력의 필요성이 낮으며, 오후 3-4시까지만 근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오후 3-4시 이후에는 지원인력이 없어, 지원인력의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동일한 시니어일자리를 통해 배치된 경우(나눔터 G)에도 시니어의 어린이집 보조 근무 경력, 보수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도움 의사가 있는 경우, 효용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자들이 개별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실무자들끼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거나 정보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가 없다보니 인근 나눔터 실무자 또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실무자에게 문의를 하거나 정보공유를 하고 있었다.

6) 기관의 사업에 대한 관여 수준

나눔터 운영을 수탁받은 기관의 기관장이 사업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나눔터 I, F, G)들을 발견하였다. 주민운영위원회가 운영을 주도하는 1개 나눔터를 제외한 모든 나눔터들이 다른 업무와 나눔터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자 1인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일임하고 기관에서 사업을 협력, 지원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 활성화의 잠재력을 볼 수 있었던 나눔터에서는 기관장이 나눔터 설치에서부터 사업운영에도 관심을 갖는 경우(나눔터 I), 실무자가 성과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권한 위임하는 경우(나눔터 F), 직원의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결정적인 의사결정으로 지원하는 경우(나눔터 G) 등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 적극적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눔터 I의 경우, 기관장이 나눔터 공간리모델링 과정에서 아이들의 성장발달과 선호를 고려한 디자인 요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나눔터 F의 경우, 기관장이 세부적인 나눔터 활동 및 관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단기 성과가 어려운 사업 성격을 이해하고, 실무자가 성과에 부담 갖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눔터 G의 경우, 기관 경영진 임원은 직원들이 어린이집 하원 이후나 휴원일에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위해 넓지 않은 사무실 공간 일부를 할애하는 의사결정을 흔쾌히 해주었다.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방식에 따른 유형

이상 살펴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실태 및 운영상의 특징들을 기준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모델을 유형화하였다.

1) 유형 1: 주민자치형

나눔터 A 사례로 이미 공동육아 경험이 있거나 공동육아에 대한 가치지향이 매우 높은 몇명의 부모들이 나눔터 내부 공간 구성 및 비품 구입에서부터 초기 나눔터 운영이 자리잡기까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형태이다. 나눔터 A 사례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아이들로 키워내는 마을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다. 면담에 응한 주민운영위원회 대표

는 맛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포함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싶다, 꼭 아이 키우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동네 주민이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대표 혼자만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대표를 중심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몇명의 부모들이 초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내 아이만 잘 키우기 위해' 또는 '혼자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 서로 돕는 공동체 삶의 방식이 옳다는 가치가 의식화되어 있고, 그러한 가치를 기초로 나눔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자발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눔터 A의 경우, 부모독서모임 '민들레'가 운영되고 있었다. '민들레'는 공동육아를 주제로 하는 정기간행물의 이름이기도 하며, 부모들은 이 잡지를 읽고, 공동육아에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해보기도 하고, 공동체적인 돌봄방식의 유익함, 공동체 가치 등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셋째, 유연하며, 협력적인 방식의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었다. 나눔터 조성 시작 단계에서 대표를 맡았던 부모가 바쁜 일이 생기면서 일의 진행 속도가 느려졌다. 함께 참여하던 운영위원회 부모들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신임 대표가 이전 대표에게 제안을 해서 대표직을 인계받았다. 이전 대표는 여전히 운영위원회에 남아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총무를 담당하고 있다.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넷째, 체계적 구조를 갖추어 운영되고 있었다. 참여부모들이 스스로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로 구분되는 체계적 운영구조를 만들었다. 대표자 회의는 2-3개월에 1회, 운영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을 자체평가하기 위한 회의로 진행한다. 또한 육아팀들이 나눔터 공간을 여유있게 이용하기 위해 시간표를 6개월 단위로 조정한다. 밴드를 이용한 소통구조를 갖고 있으며, 핵심

운영위원 2-3명이 업무 진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다. 육아팀 구성을 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나눔터 운영기간이 채 1년이 안되지만, 업무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어나가고 있었다.

다섯째, 부모들에게서 보이는 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눔터 A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한 부모는 나눔터를 '경로당의 젊은 버전'이라고 생각한다. 나눔터 사업은 지방정부의 돌봄정책의 일환이지만, 지자체에서 나눔터 공간 및 예산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주민은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정책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볼 때, 나눔터 사업을 직접적 복지서비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돌봄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나눔터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마을만들기와 유사한 리더의 선도적 활동이 나눔터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성공한 마을만들기 사례에서 보면 흔히 사업 초기에 사업 정착에 중요한 헌신적 역할을 하는 리더를 발견할 수 있다. 나눔터 A의 경우에도 리더 역할을 하는 대표의 헌신적 기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거의 매일 임시회의를 열고, 처리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 2-3명의 핵심 운영위원들이 결정하기도 하는 협력적 운영 체계가 있지만 '대표는 한달 내내 나눔터에 붙어 있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초기 나눔터 조성 및 운영에서 리더의 역할이 큰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여러 강점이 있지만, 나눔터 이용 자격 범위가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이 파악되었다. 물론 나눔터 A의 경우에는 운영위원들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적극적 대처로 문제를 잘 해결했지만, 특히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거단지 내 나눔터를 설치하는 경우, 외부 주민 이용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유형 2: 직장내 설치형

사업신청 주체가 민간단체인 나눔터 E의 사례로 직장 내에서 중간관리자인 총괄팀장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자녀돌봄은 물론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의 어린이집 하원 이후 돌봄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동기가 사업을 신청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직원수가 많지 않고, 여직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직장이었으며, 직장의 중요 의사결정자인 임원진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이해가 또한 나눔터 설치에 결정적이었다.

첫째, 직원들의 틈새돌봄 요구가 나눔터 사업 신청을 촉발시켰다. 나눔터 E의 경우, 나눔터 사업 신청 동기부터가 다른 수탁기관과 차이가 있었다. 수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주로 기혼의 여직원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지만 오후 3-4시면 끝나는 어린이집 퇴원 이후에 자녀를 돌보기가 어려웠다. 나눔터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어린이집에서 퇴원한 아이들을 사무실에 데려와 한쪽 바다에 임시로 요가매트를 깔아놓고 놀도록 했다. 달리 해결할 수 없어 택한 방법이었지만, 아이들이 노는 공간은 좁고, 별다른 도서나 비품도 구비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 공간은 어린이집 하원 이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기념일 등으로 인한 휴원일, 배우자와의 저녁시간 교대 돌봄이 어렵게 된 경우,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 등에 직원 자녀들이 모여 함께 놀고 어울려 지내던 곳이었다. 그러나 직원 자녀들만을 위한 나눔터 설치는 아니었으며, 기관에서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동반 자녀가 머무르는 공간을 필요로 하기도 했으며, 일차적인 목표는 지역사회 공동체 형태의 돌봄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나눔터 사업 신청을 주도했던 직장내 총괄팀장은 마을공동체 돌봄에 대한 가치가 분명했다.

둘째, 나눔터사업 신청은 직원들의 일 - 가정 양립 요구에 대한 임원진의 이해와 수용이 있어 가능했다. 지자체의 나눔터 사업공고를 확인한 직장내 중간관리자가 이사회에 나눔터 신청을 제안했다.

해당 직장은 기혼 여직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사회에서 취업주부의 일 - 가정양립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업신청을 할 수 있었다. 직장내 사무실 전체 규모가 크지 않아, 나눔터 설치가 용이하지 않았으나, 임원진에서는 원래 사무실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회의실 자리를 기꺼이 나눔터로 변경하도록 승인하였다.

셋째, 일-가정 양립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직장분위기가 기초적인 배경이 되었다. 해당 직장은 민간단체로서 양성평등의 가치 실현이 단체의 중요한 활동 목표이며, 나눔터 설치 이전에도 이미 어린이집 하원시간에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는 근무 유연성을 갖고 있었다. 직원들 역시 일-가정 양립의 가치가 수용되어 있었기에 누구나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심리적 제약을 받고 있지 않았다. 모든 직원들이 자녀돌봄을 위해 직장내 설치된 나눔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돌봄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기에 사무실 내 나눔터 공간사용을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근무 중 자녀안전 확인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고려가 이루어졌다. 나눔터가 설치된 위치는 사무실과 같은 층에 바로 인접해 있었으며, 또한 근무 중 직원들이 나눔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수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사무실도 리모델링을 했다. 사무실 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해 사무실에서 육아나눔터 내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했다. 육아나눔터에 상주하는 전담 관리자가 없기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것이다.

다섯째, 직원들 스스로 나눔터 운영에 자발적 참여를 하고 있었다. 나눔터는 지역사회의 양육기부자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나눔터 설치의 출발점이 해당 기관의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문제 해결이었기에 직원들이 나눔터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나눔터 설치 단계에서는 지자체 지원 예산으로 장난감이나 도서 등의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을 구입 가능하다. 그러나 설치 이후 추

가적인 장난감 구입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직원들은 집에서 갖고 놀던 장난감을 가지고 와 비치하거나, 도서도 집에서 갖고 있던 것들을 나눔터에 가지고 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앞으로 직장내 나눔터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돌봄인력 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나눔터 E의 경우, 나눔터 관리는 직장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였다. 새롭게 설치된 나눔터 관리업무는 분명 추가적인 업무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자는 부담감 정도의 업무증가는 아니라고 답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준비물을 셋팅하거나, 나눔터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가 추가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하루 3시간 정도를 시니어일자리 사업에서 파견된 선생님이 근무해주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주는 시니어일자리 파견 선생님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보조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으며,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는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었던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무자는 현재 시니어 선생님 한분이 잘 도와주고 계시지만, 3명 정도로 지원 인력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실무자의 직장내 업무에 치명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눔터 내에 돌봄을 해줄 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방법, 지역사회 내에서 육아팀들과 하나의 팀을 구성해, 상호부조적인 방식으로 돌봄을 해결하는 방법 등 상시적인 돌봄인력에 대한 과제는 남아있다.

3) 유형 3: 기관 개입 지원형

기관에서 나눔터를 설치하고 사업 실무자가 공동육아팀 구성 및 공동육아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는 형태로서, 건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유형이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탁한 나눔터 I를 성공

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첫째, 나눔터 사업을 기관의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기관장이 나눔터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건가센터의 나눔터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실무자 1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육아팀 구성 및 확대, 외부 공동육아나눔터 발굴 등 지역사회 주민과의 유대,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탁한 제주시지역의 다른 나눔터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나눔터 I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나눔터 내부 리모델링 설계 및 시행에 직접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나눔터를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지자체의 나눔터 운영 컨설팅에도 참석하는 등 사업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둘째, 공동육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매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다른 나눔터들의 경우에는 공동육아를 위한 상시프로그램이 아예 없거나, 상시프로그램의 주제가 공동육아의 가치와 부합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한개 정도의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매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이었다. 이에 비해 나눔터 I의 경우에는 매주 요일별로 다른 주제의 프로그램 3-4개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주제도 오감발달, 베이비마사지, 키즈요가 등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 돌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나눔터 이용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기관 개입에 의해 주민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들 부모들이 나눔터 운영의 주체가 되고 있었다. 나눔터 설치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운영의 주체가 된 나눔터 A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나

눔터들이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 주체가 된다. 그러나 나눔터 I에서는 처음부터 주민자치적 방식을 염두에 두고 주민운영위원을 모집했다. 나눔터 리모델링, 상시프로그램운영 등의 업무는 수탁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부모들이 주민운영위원들과 함께 나눔터 이용 규칙정하기, 기관 건물 옥상에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 설치 요청하기, 나눔터를 마을사랑방처럼 매일마다의 일상적 자녀돌봄공간으로 이용하기, 나눔터까지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 검토하기 등을 실행하고 있었다.

넷째, 사업운영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안내 리플릿이 제작, 배포되고 있었다. 다른 나눔터에서 제작한 나눔터 안내 리플릿에는 나눔터 사업의 목적, 나눔터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었다. 나눔터 I의 리플릿에는 나눔터 사업 이해를 위한 내용 외에 상시프로그램 주제 및 시행 요일, 주민운영위원 모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나눔터 사업의 방향에 대해 기관에서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유형 4: 농촌지역 공동체 거점 공간형

거주인구밀도가 낮고 이용 가능한 여가시설이나 문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의 경우, 나눔터에서 일상적 공동육아, 틈새돌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인적, 물적자원을 연계하는 돌봄, 여가문화, 공동체 기능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 특성을 보이는 나눔터 F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사회적 통합의 과제가 있는 제주지역의 경우, 이 유형은 좀 더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첫째, 나눔터 소재 건물 내 운동시설, 도서관, 강당 등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시설이 집약되어 있었다. 나눔터 F가 소재해 있는 지역은 도심과 거

리가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 특성을 지니는 곳으로 나눔터 소재 건물 내 시설 외에는 이용가능한 운동시설이나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려운 곳이다. 돌봄공간으로서 나눔터 외에 주민들이 헬스, 성인발레 등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집약적 시설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

둘째, 주중과 주말에 많은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주변에 달리 갈곳이 없는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건물 2층에 소재한 도서관을 거의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도서관은 단지 책을 읽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나고 노는 곳이었다. 특히 주말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동네 사랑방과 같은 곳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셋째, 실무자는 나눔터 이용 부모들과 매우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개인적 성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했으나 실무자는 나눔터를 이용하는 부모들과 인사를 하는 수준을 넘어,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업실무자로서 위계적, 일방적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넷째, 다양한 문화적 요구와 역량이 있는 다수 이주민 부모들이 나눔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여유 있는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한적한 제주 농촌으로 이주를 했으나, 지역에서 이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였다. 해결 방법의 하나로 나눔터의 상시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른 조사(조한혜정, 2017, 미간행)에 의하면 이주민들은 취미, 여가, IT 등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터 수탁기관에서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연계하여 틈새돌봄 지원 인력, 부모역량 프로그램, 주민까지 포용하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 및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12월말 기준, 제주 공동육아나눔터 10개소의 사업실무자 및 운영주민대표를 대상으로 2017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이에 면담 조사한 결과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나눔터 이용 실태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나눔터 개소 이후 약 9개월 경과된 현재 이용자수가 평균적으로 많지는 않았으며, 적게는 하루 2-3명, 많게는 40여명으로 이용자수 차이가 컸다. 1회 이용시간도 짧게는 30여분, 길게는 4시간 정도로 나눔터별로 이용이 활성화된 정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신규로 시작한 나눔터 사업을 홍보하고, 이용자를 모집하기에는 9개월이라는 기간이 충분치 않은 면도 있었을 것이며, 나눔터별로 운영 여건이나 실무자의 업무 추진력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주민운영위원회가 나눔터 운영을 맡은 나눔터 A 경우는 육아팀과 어머니팀을 합해 9개팀이 나눔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의 기존 사회적 관계가 나눔터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이용시간대는 오전시간과 오후시간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가장 이용자가 집중되는 것은 어린이집 하원 이후였다. 이는 나눔터 이용자가 오전에는 영아, 오후에는 유아 또는 초등학교생으로 분리되고 있는 것으로 동일 공간에서 영유아 및 초등학교 돌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셋째, 나눔터 공간 환경은 수전 및 조리시설, 부모휴식공간 확보 등의 면에서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모든 나눔터들이 최소 규모 기준 40m²를 충족

시키고 있었지만 시설 면에서는 수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조리시설 및 기구 등이 부족했고, 부모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쉴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 경우가 적었다. 단순히 아이들이 머무르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수유, 간식제공 등의 돌봄활동과 함께 하는 식사, 정보공유,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부모들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성격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공간설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눔터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업무는 이용자 모집이었다. 나눔터 A, 나눔터 I 사례를 보면, 현수막, 전단지 배포 등의 비대면 홍보보다는 설명회 개최나 부모들에게 필요한 상시프로그램 운영이 이용자 모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효과적 홍보를 위해 나눔터 운영 실무자 대상의 교육이나 컨설팅에서 이러한 점이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주민에 비해 제주 원주민의 육아팀 참여율이 낮고, 참여 원주민들 대부분이 취업주부였다. 원주민들이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이유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제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가정 부모들이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실무자의 역량에 따라 상시프로그램 운영에 차이가 있었다. 나눔터 I는 개소시부터 바로 정기적인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나눔터 A는 짧은 운영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어린이들까지 수용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두 나눔터는 모두 정기적인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거나 많은 수의 육아팀이 나눔터를 이용하고 있어 상대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일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나눔터 경우, 컨설팅을 통해 상시프로그램 운영을 안내했음에도 프로그램 기획을 어려워하거나 공동육아와 거리가 먼 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식이었다.

셋째, 나눔터 출입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고 있지 못했다. 나눔터 상주 관리자가 없어 나눔터 이용 육아팀이 있을 때만 개별 이용자들이 나눔터를 이용할 수 있다거나 실무자가 배치된 경우에도 겹침으로 나눔터가 문만 열려 있는 채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4시간 정도의 보조인력을 배치받고 있는 나눔터 경우에도, 보조인력의 역할 수행 능력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상태였다.

넷째, 많은 나눔터에서 개방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나눔터 문 개폐를 부모들에게 위임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안전 문제, 실무자의 근무시간 연장, 주말 지원인력 부재 등의 이유로 늦은 저녁시간이나 주말 나눔터 개방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다섯째, 실무자의 공동체 사업경험이 나눔터 운영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가 공동육아 활동 경험, 공동체 관련 사업운영 경험, 보육관련 경험 등이 있을 때, 나눔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관련 활동 경험을 통해 운영의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 가치가 내면화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보조인력은 나눔터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근무와 관련해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 없이 파견되어 공동육아 사업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했으며, 단지 일자리라고만 인식하는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관장의 나눔터 사업에 대한 관여나 경영철학이 나눔터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리더십이 사업실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며, 일반 사무업무와는 성격이 다른 사업이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관장의 관여가 좀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실무자들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교육이나 체계적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새로운 사업이기에 이전의 사업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자들은 개인적인 친분이거나 사업 열의 정도에 따라 각자 알아서 사업운영

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한두개 나눔터 경우, 지원기관인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로부터 방문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1회에 그쳤으며, 기타 실무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구성이나 체계적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곱째, 지역여건에 맞는 나눔터 운영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본 결과 주민자치형, 직장내 설치형, 기관 개입 지원형, 농촌지역 공동체 거점 공간형의 네개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민자치형은 나눔터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체 가치를 기반으로 자발적, 주체적, 체계적 구조에 의한 운영을 하는 경우였다. 여기에는 초기 사업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더의 선도적 활동이 있었으며, 유연하고 협력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있었다. 직장내 설치형은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적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직장에서 직원들 스스로 자녀의 틈새돌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임원진의 사업신청 및 공간할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직원들은 나눔터 운영에 협력적이었지만, 직장근무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돌봄인력 배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속제였다. 기관 개입 지원형은 주민자치방식의 운영이 지향해야 할 사업방향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민운영위원회 구성을 유도하고, 상시프로그램으로 이용자 확보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농촌지역 공동체 거점 공간형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나눔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여가문화시설을 집약적 형태로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 나눔터가 주민들의 돌봄, 여가문화, 자원연계 등을 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유형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순히 놀이나 돌봄 공간만이 아니라 돌봄활동을 고려한 공간계획 및 설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눔터가 개인적으로 자녀돌봄을 하는

공간에서 공동육아의 공간, 나아가 마을의 돌봄공간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한 경우 3-4시간 이상 장시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수유, 간식, 함께 하는 식사 준비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함께 모여 음식을 조리하고 식사를 하는 활동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활동 그 이상의 큰 공동체적 의미를 지닌다.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공동체 운동이 앞서 있는 외국 사례에서도 구성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일명 '만찬' 프로그램은 공동체 의식과 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 활동이다. 이웃과 서로 돌봄을 주고받는 공동체 돌봄을 지향한다고 볼 때, 참여자들의 공동체 유대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만찬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은 나눔터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과 가구배치 등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나눔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둘째, 나눔터 공간 조성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직접 주도하여 진행하거나 또는 시공업체에 맡길 경우 반드시 잠재적 이용가능자인 인근 거주지역 부모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나눔터 중에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간리모델링을 한 나눔터, 세부적인 사항까지 어린이 눈높이에서 디자인을 고려한 나눔터, 부모휴식공간이 있는 나눔터 등 공간조성이 우수하며, 나눔터마다 다양한 특색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나눔터들은 부적합한 높이의 책장, 획일적인 색상 및 디자인 등의 구성을 한 곳들도 있었다. 잠재적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용하기에 편리한 나눔터, 특색있는 디자인의 나눔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잠재적 이용자들을 공간조성과정에도 참여토록 하는 것은 이후 나눔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이다.

셋째, 공동육아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나눔터 개소 후 곧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컨설팅, 우수한 상시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 체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시프로그램을 개소 초기에 운영하는 것은 이용자 모집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부모들에게 매력적인 상시프로그램은 가장 강력한 홍보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경험이 많지 않은 실무자들의 경우, 상시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상시프로그램이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사교육의 대체가 아니라 공동체 가치에 부합되며, 부모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나눔터의 경우에도 내 아이 잘 키우기가 아니라 마을의 우리 아이들 잘 키우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육아가 공동체 가치를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지원은 제주의 경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 경우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같은 중간지원조직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공동육아나눔터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10여개 이상 되는 나눔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나눔터 수탁기관은 부모들로 구성된 주민 운영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눔터 A사례처럼 부모들이 직접 공간리모델링 단계에서부터 나눔터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공동육아 가치 실현이라는 점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하다. 나눔터 운영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공동육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에 처음부터 사업에 적극적 참여와 강한 추진력을 갖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나눔터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실태를 감안할 때, 이 방법만을 고수하기 어렵다. 기관에서 나눔터 운영을

수탁하게 되는 경우, 부모들이 자발적, 자치적으로 나눔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을 유도하고, 기관에서 행정지원을 통해 일부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함께 가야할 것이다.

주민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운영 방법은 나눔터의 개방시간 연장 요구의 문제도 해결하기 용이하다. 기관이 나눔터 운영주체가 되는 경우, 나눔터 개폐관리나 안전사고 문제 등에 관한 책임 때문에 실무자가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해야 하나,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주말 개방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주민운영위원회가 운영주체가 되는 경우, 주말 이용을 원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나눔터 개폐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다섯째, 돌봄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효율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공동육아에 대한 사전 교육 없이 시니어 일자리를 통한 인력이 일부 나눔터에 단시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돌봄 보조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부모들이 주민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나눔터이든, 수탁기관이 운영주체가 되는 나눔터에서 일시적 돌봄, 긴급돌봄, 틈새돌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돌봄공간이 되려면, 상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운영주체가 된다고 해도, 나눔터에 부모들이 상시거주하기 어렵고, 기관의 경우에도 겸임하는 실무자 1인이 다수의 자녀들을 상시 돌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돌봄을 나눔터에서 공동체 돌봄으로 지원할 수 있으려면 더욱 보조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어떤 방법으로 보조인력 지원체계를 만들던 지켜야 할 기준은 공동체 가치를 수용하는 마을주민이 마을의 아이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나눔터 운영기관의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나눔터마다 기관장의 사업에 대한 이해나 관여

수준의 차이가 크고, 실무자의 공동체 사업 역량의 차이도 컸다. 그러나 현재는 기관장이나 운영인력 대상의 교육이나 컨설팅, 협의체 등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우선 수탁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공동육아의 가치, 사업목표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 관여도를 높여야 한다. 사업실무자를 대상으로는 추가적으로 사업운영 노하우를 담은 구체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눔터의 경우, 집중적인 컨설팅을 해야 할 것이다. 나눔터의 한 실무자는 자신의 역량강화가 목표라 말하며, 운영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사업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배포와 함께 실무자들의 희망하는 교육내용 요구를 파악하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나눔터 실무자들 사이의 소통을 지원해 줄 협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등, 업무수행 관련된 회의나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역여건에 따라 맞춤형의 다양한 나눔터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운영방식 유형으로 볼 때는 운영주체가 주민운영위원회가 운영주체가 되는 방식, 기관이 개입 지원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근무가 가능한 소규모 직장, 기혼여성이 다수인 직장의 경우, 직장내 소규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주밀도가 낮고 자녀수가 적은 농촌의 경우, 도심지역에 비해 나눔터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돌봄 외에 여가문화, 자원연계 기능도 함께 하는 가족여가문화시설 형태의 나눔터 운영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제주의 나눔터들은 오전시간 나눔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대체 기능,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늦은 시간 초등생들의 돌봄을 하는 방과후 초등돌봄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특성화된 나눔터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3) 디트 News 24(2017.12.6). 천안시 공동육아나눔터 9호점 개소.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491>.
- 4)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 5) 세종의 소리(2017.6.8). 세종시, “공동육아나눔터 25개소로 늘린다”-세종형 공동육아 활성화 정책 본격 추진, 아동 여성친화도시 구축.
- 6) 세종특별자치시(2018). 100대 과제 및 일반공약 - 12월말 추진상황 보고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 7) 세종특별자치시. <http://search2.sejong.go.kr>.
- 8) 시흥시청. <http://www.siheung.go.kr>.
- 9) 여성가족부(2013). 2013년 가족품앗이 사업안내.
- 10)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7.9.4). 여성가족부와 LH 공사, 경단여성 일자리 창출과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을 위해 손잡는다.
- 11)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12) 정병호(1992).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바람직한 공동육아-인류학적 시각.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편. 21세기 영육아보육. 한울.
- 13) 제주특별자치도(2017). 수놓음 공동육아. 육아나눔터: 운영 매뉴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 14) 조막래·김한별(2015).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15) 조형(1994). 공동육아란 무엇인가. 공동육아연구회 편. 함께 크는 우리 아이. 서울: 또하나의 문화.
- 16) 지방행정신문(2018.1.11). 시흥시, 2018년도 시흥형 주거복지 지원 확대 추진. <http://www.culturein.co.kr/8211>.
- 17) 차성란(2010). 주민주도적인 마을만들기를 위한 기관의 역할-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77-100.
- 18) 차성란·권혜진·조정현(2011).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성과발굴 및 운영모델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 19) 차성란(2017).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만들기, 2017년 시흥아이 돌봄분야 요구분석 결과 및 정책제안(미간행).
- 20) 트론토, 조안(2014). 돌봄 민주주의, 김희강, 나상원 옮김, 서울: 아포리아. Tronto, C. J.(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 and 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7).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침.

- 투 고 일 : 2018년 02월 28일
- 심 사 일 : 2018년 03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04월 14일